

# 신용거래 핵심(요약)설명서

※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
[주의] 고객님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## ■ 한눈에 보는 상품 정보



※ 위 아이콘 정보는 상품 특성을 도식화 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## ■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**신용거래**는 고객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회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“신용거래용자” 또는 “신용거래대주”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“**신용거래용자**”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회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용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**가격상승 예상시**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.  
용자금의 재원에 따라 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하는 **자기용자**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하여 결제하는 **유통용자**가 있습니다.
- “**신용거래대주**”는 회사로부터 빌린 증권(담보는 매도증권)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**가격하락 예상시**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.
-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(100% 증거금 거래)할 때와 비교시 **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**가 필요합니다.
- **(임의처분(반대매매) 위험)** 매수증권(담보) 가치가 담보유지비용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(반대매매)에 따른 손실 위험
- **(레버리지 위험)**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**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**

※ <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>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,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용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.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,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**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**가 있습니다.

## ■ 투자위험등급 : 초고위험 등급

- 회사는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초고위험에서 초저위험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
## ■ 발생가능한 불이익 및 투자자 유의사항

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 되며,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◎ <예시> 투자원금 450만원, 신용거래용자금 550만원으로 시가 1만원 A주식 1천주 매입하였으나,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(140% 가정)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

※ 반대매매 절차 ⇨ 거래 제비용(수수료, 세금, 대출이자)은 고려하지 않음(포함시 손실규모 증가)  
(D일)회사가 고객에게 담보유지비율 하회 발생 사실 및 추가담보납입 요구 → (D+1) 고객이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 발생 → (D+2) 회사가 반대매매 실행

날짜	주식가격	계좌평가금액	담보비율	비고
D일 장중매수	10,000	10,000,000	182%	
D일 장마감	7,230	7,230,000	136%	담보부족 발생, 추가담보납입 요구
D+1일	6,500	,6500,000	131%	추가담보 미납(120만원 담보부족)
D+2일	반대매매 실행 $* \text{반대매매 수량} = \frac{6,500,000 - (5,500,000 \times 1.4)}{6,500 - (5,525 \times 1.4)} = 972$ ⇨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4.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에 관한 사항 중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		

\* 담보평가비율 = 계좌평가금액 / 용자금

⇨ (반대매매가를 전일 증가 대비 15% 하락가로 정한 경우) 전일증가(6,500원) 대비 15% 하락한 가격(5,525원)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, 972주 반대매매 필요

→ 반대매매 수량(972주)이 6,8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(140%)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661만원(972주 × 6,800원)으로 담보부족금액(120만원)의 5.5배 수준

⇨ (반대매매가를 전일 증가의 20% 하락가로 정한 경우) 전일증가(6,500원) 대비 20% 하락한 가격(5,200원)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,0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

→ 반대매매가 6,8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680만원(1,000주 × 6,800원)으로 투자원금(450만원)의 상당부분(71%)에 달하는 손실(320만원) 발생

## ■ 민원·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

Q1.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?

- 일부 증권(예 : 증거금률 100%인 증권)은 신용거래가 불가능 합니다.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홈페이지, HTS,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Q2.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- 회사가 정하는 기일(요구일 포함 2영업일)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 만큼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. 반대매매 시 전일 증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,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

Q3. 그 밖에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?

- i) 상환기일 미상환 시 ii) 이자·매매수수료·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사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**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.**

#### Q4. 신용매수시 자기용자와 유통용자 중 어떤 것으로 매수가 되나요?

- 신용매수는 **회사의 자금 상황 및 차입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기용자 또는 유통용자로** 처리되며 신용매수 주문입력 후 '주문확인'창 및 '주문체결내역'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# Q5.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?

-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**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**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, 연장은 기본용자기간 단위로 가능합니다.(단, **대주는 만기연장 불가**)

※ 상환매매 가능시간 : 거래소 주문 가능 시간

※ **현금/현물 상환 가능시간 : 현금상환은 오후 11시, 현물상환은 오후 4시까지 가능**

### ■ 청약의 철회

-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(회사와 고객간에 해당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합니다. 다만, (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) **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**

- ① (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)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
- ② (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) 계약 체결일

- 청약의 철회는 금융소비자가 **신용용자 원금(또는 주권)과 기 발생한 이자를 회사에 상환**하고, **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(☎1588-2323) 유선 접수의 방법으로**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 등을 반환 받는 날로부터 **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**하고,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 .

### 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**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
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
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**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**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### ■ 자료열람요구권 안내

- 고객님의께서는 분쟁 조정 또는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삼성증권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
-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의 분쟁 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 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삼성증권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## ■ 민원 및 상담 연락처

이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패밀리센터(1588-2323, 080-911-0900) 및 홈페이지(www.samsungpop.com), 영업 지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방문판매 및 유선·무선·화상통신·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계약한 금융상품 관련 소송 시에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, 또는 거주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, 주소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 할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합니다.

# 신용거래설명서

## ■ 상품개요 및 특성

### 1. 대상고객

- ◎ 개인 (채무불이행자, 성년후견/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, 미성년자, 법인 등 불가)  
※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관련 협회 교육 이수 및 거래소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

### 2. 신용거래 대상종목

신용거래 용자 대상종목	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(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중 회사가 정하는 종목(단,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, 투자위험종목, 관리종목으 로 지정한 경우 및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제외) ※ 신용거래 가능종목 확인 방법 홈페이지 : <a href="https://www.samsungpop.com">https://www.samsungpop.com</a> > 인터넷뱅킹 > 신용/대출가능종목조회 HTS/mPOP : [8186] 신용가능종목 / बैं킹대출 > 신용 > 신용가능종목
신용거래 대주 대상종목	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회사가 정하는 종목 ※ 대주 가능종목 확인 방법 홈페이지 : <a href="https://www.samsungpop.com">https://www.samsungpop.com</a> > 인터넷뱅킹 > 신용/대출가능종목조회 HTS/mPOP : [7059] 대주거래가능종목조회 / बैं킹대출 > 신용 > 대주가능종목

### 3. 신용거래 보증금률

- ◎ 신용거래 용자 : 종목별 차등(대용 → 재매매 → 현금 순)
  - 45%(ex. 현금만 존재시 현금 45% + 신용주식 55%)
  - 50%(ex. 현금만 존재시 현금 50% + 신용주식 50%)
  - 60%(ex. 현금만 존재시 현금 60% + 신용주식 40%)
- ◎ 신용거래 대주 : 100%(대용 → 재매매 → 현금 순)

### 4. 신용한도

- ◎ 신용한도 : 용자, 대주 **합산 기본 20억**(개별 심사를 통해 증액 가능)
- ◎ 대주한도 : 초기투자자 3천만원,  
 경험투자자 7천만원(회사 투자기간 2년내 & 투자횟수 5회 이상 &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)  
 성숙투자자 약정한도(회사 투자기간 2년 이상 & 투자횟수5회 이상 &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)

### 5. 담보유지비율

#### ◎ 종목별 담보유지비율

신용(보증금률)			대주	적용방법
45% 종목	50% 종목	60% 종목		
140%	150%	160%	140%	계좌 담보유지비율(가중평균)

- ※ 종목별 보증금률 확인 방법  
 홈페이지 : <https://www.samsungpop.com> > 인터넷뱅킹 > 신용/대출가능종목조회  
 HTS/mPOP : [8186] 신용가능종목 / बैं킹대출 > 신용 > 신용가능종목

- ◎ 동일 계좌 내 여러 종목이 있는 경우, **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**합니다.

<예시> 보증금률 45% 종목 100만원, 보증금률 50% 50만원, 대주금액 30만원 보유계좌의 담보유지비율  

$$\frac{[(100만원 \times 140\%) + (50만원 \times 150\%) + (30만원 \times 140\%) ]}{[100만원 + 50만원 + 30만원]} = 143\%$$

-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.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금액 산출기준은 '계좌 담보유지비율'로 산정합니다.

## 6. 용자·대주 기간 및 만기연장 조건

- 신용거래 용자 : 180일(기본 상환기간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\*)
  - \*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만기연장 가능
    - ① 대상 종목이 연장일 현재 신용가능 종목일 것
    - ② 계좌의 담보비율이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일 것
    - ③ 신용이자 미납이 없을 것
    - ④ 휴대전화 번호 미제공 고객이 아닐 것
    - ⑤ 신용연체정보등록 및 금융사기피해 고객이 아닐 것
    - ⑥ 신용공여정보확인서 등록 고객일 것
- 신용거래 대주 : 90일(만기 연장 불가)
-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, **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.**
- 만기연장은 만기15일 전부터 고객의 별도 신청(유선, 온라인, 영업점 방문)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.

## 7.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납입 기간

- 요구일 포함 2영업일 이내
  - D일 증가기준으로 담보를 평가해 부족시 추가담보를 요구하며, D+1일 08:00, D+2일 08:00 두 번 연속으로 담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D+2일 동시호가에 반대매매 처리됩니다.
  - 추가담보납입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담보인정여부,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, 고객은 추가담보납입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
## 8. 이자율 및 징수일 등

- 신용거래용자 이자율

신용거래기간	7일이하	15일이하	30일이하	60일이하	90일이하	90일초과
지점/은행연계 개설 계좌	5.1%	8.1%	8.7%	9.1%	9.6%	9.8%
비대면 개설 계좌	5.6%	8.6%	9.2%	9.6%	9.8%	9.8%

※ 신용거래용자이자율 : 기준금리 + 가산금리로 구성

- 기준금리 : 직전월 4개 신용평가사 CPI년물(A1등급) 평균금리
- 가산금리 : 리스크프리미엄,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, 제반비용(자본비용, 업무원가 등), 목표이익률을 반영
- 매월 기준 및 가산금리 공시 :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(<https://dis.kofia.or.kr>) > 금융투자회사 공시 > 특정공시 >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> 기준 및 가산금리

- 신용거래대주 이자율 : 연4.5%, 연6.0% 종목별 상이(단, 당일 상환시에도 1일치 이자 징구)

※ 대주이자율 확인방법 : HTS/mPOP : [7059] 대주거래가능종목조회 / banking대출 > 신용 > 대주가능종목

- 신용거래 연체 이자율 : 최종 적용이자율 + 3.0%(최대 연11.0%)

<연체이자 예시>

대출금 5천만원에 31일간 만기 미상환 연체시 대출 원금에 연체이자율(예 : 11.0%) 적용하여 상환시 연체이자 467,123원(5천만원×11.0%×31/365)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
- 이자 징수일

- 정기 : 매월 첫 영업일
- 수시 : 상환일(매매결제시, 현금상환시)

- 이자 적용방식

▪ 신용용자 : 소급법으로 최종 이자율 적용 ▪ 신용대주 : 단일법

※ 소급법 :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
 체차법 :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

단일법 : 신용 이용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

◎ 신용거래용자 이자 계산(예시1) [소급법과 체차법 비교]

- 사례 : 용자금 5천만원, 대출기간 100일, 지점/은행연계 개설 계좌
- 대출이자율이 ~7일 :5.1%, ~15일 :8.1%, ~30일 :8.7%, ~60일 :9.1%, ~90일 :9.6%, 90일초과 :9.8%이나, 대출기간이 90일을 초과 할 경우
  -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 단의 5.1%, 8.1%, 8.7%, 9.1%, 9.6%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일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인 9.8%로 일괄 적용됨.
  - 체차법일 경우 7일까지 5.1%, 15일까지 8.1%, 30일까지 8.7%, 60일까지 9.1%, 90일까지 9.6%, 90일 초과 9.8%순으로 적용.

즉,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,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.

구분	7일	15일	30일	60일	90일	90일 초과	100일
소급법	이자율 연 9.8% 적용						☞ 총 이자 1,342,465원(a)
체차법	연 5.1%	연 8.1%	연 8.7%	연 9.1%	연 9.6%	연 9.8%	☞ 총 이자 1,219,176원 (b)
							▶ 123,289원 차이(a-b)

◎ 신용거래용자 이자 계산(예시2) [비대면 개설 계좌와 지점/은행연계 개설 계좌 비교]

- 사례 : 용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85일
- 비대면 개설 계좌의 61일~90일 이자율은 9.8% 이고, 지점/은행연계 개설 계좌의 61일~90일 이자율은 9.6%로 적용. 동일한 용자기간이라도 계좌개설 경로에 따라 적용금리가 다르며, 비대면 개설 계좌의 이자가 지점/은행연계 개설 계좌보다 많음(단, 90일 초과외의 경우 이자 차이 없음).

구분	7일	15일	30일	60일	90일	85일
비대면 개설	이자율 연 9.8% 적용					☞ 총 이자 1,141,095원(a)
지점/은행연계 개설	이자율 연 9.6% 적용					☞ 총 이자 1,117,808원 (b)
						▶ 23,287원 차이(a-b)

◎ 신용거래대주 이자 계산(예시3) [단일법, 거래제비용은 고려하지 않음]

- D일 대주매도 : 이자율 4.5% 종목, 수량 1,000주, 매도체결가 12,000원
- D일 상환매수 : 수량 500주, 매수체결가 11,000원(당일 상환시 1일치 징구)
  - 대주이자 739원 [(12,000원 × 500주) × 4.5% / 365 = 739원]
- D+1일 상환매수 : 수량 500주, 매수체결가 10,000원
  - 대주이자 739원 [(12,000원 × 500주) × 4.5% / 365 × 1일 = 739원]

9. 대주매각대금 이용료

- ◎ 회사는 신용거래대주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.
- ◎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: 연0.1%
- ◎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: 대주 상환일 지급

10. 유통용자 담보활용 수수료

- ◎ 회사는 유통용자 제공시 한국증권금융에 매수한 신용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, 담보활용 동의 수량을 통보합니다. 한국증권금융은 담보수량 중 담보활용 동의 수량만 대여(대주포함) 등에 활용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담보활용 수수료(기타소득)로 고객에게 지급합니다.
- ◎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일 : 매월 세번째 영업일

○ **담보활용 수수료 지급액(종목별)**

=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담보활용 수수료 × (해당계좌 담보활용 동의수량/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) ×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(60%)

○ **담보활용 수수료 계산 예시**

- 회사가 △△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,000원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았고, 각 고객의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아래 표와 같으며,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,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이 60%인 경우
- A고객 △△전자 담보활용 수수료(1,000원) =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회사분 담보활용 수수료(10,000원) × (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(100주) /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(600주)) ×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(60%)

○○월 ○○일 △△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

고객명	담보활용 동의수량	담보활용 수수료
A고객	100주	1,000원
B고객	200주	2,000원
C고객	300주	3,000원
합계		6,000원

※ 다만,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■ **수수료 등 비용 부담 사항**

- 신용이자 외 발생비용은 신용주식 매매에 따른 매매수수료와 제세금으로 회사의 **매매수수료 정책**을 적용 합니다. 단, 반대매매로 인한 거래수수료는 **오프라인 수수료율**을 적용합니다.
- 매매수수료율 확인방법  
<https://www.samsungpop.com> > 고객센터 > 업무/상품안내 > 수수료/예탁금이용료 안내

■ **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**

- **신용거래용자 : 매도상환, 현금상환 가능**
    - **(매도상환)** 신용용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
    - **(현금상환)** 용자금을 현금으로 상환
  - **신용거래대주 : 매수상환, 현물상환 가능**
    - **(매수상환)**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매수하여 상환
    - **(현물상환)**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을 계좌로 입고하여 상환
  - **상환매체 :** 영업점 및 온라인(HTS 및 mPOP) 상으로 주문 · 신청 가능
  - **상환처리일**
    - **매매**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**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(휴장일 제외)에 매매하여 결제일에 상환**
    - **현금상환(23:00까지)**과 **현물상환(16:00까지)**은 상환 **신청일 당일 상환** 됨

단, 유통용자 현금상환은 유가증권 마감으로 **16:30 이후** 상환분은 익영업일에 담보해지 됨
  - **상환방법 :**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
- ※ 상환기일(만기일)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**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■ **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에 관한 사항**

- (담보의 징구) 회사는 아래와 같이 담보를 징구합니다.
  - **신용거래용자 시 :** 매수한 주권(증권예탁증권 포함)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
  - **신용거래대주 시 :** 매도대금

- (담보증권 평가) **당일 증가**(당일 증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)로 평가합니다. 다만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.

※ 당일 증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**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**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- (반대매매 발생 사유 및 처분순서)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1) 고객계좌 예탁 현금 → 2) 담보증권 → 3) 그 밖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

**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.**

- ▶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
- ▶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
- ▶ 이자, 매매수수료,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

1) 고객계좌 예탁 현금

- 반대매매일 06:30, 08:15, 08:40, 08:50경
- 현금상환 대상금액 산출방법

현금상환 대상금액	=	$\frac{\text{담보부족액}}{[(\text{담보유지비율} - 1) - (\text{담보유지비율} \times (\text{경과일수} / 365^{\text{주}})) \times \text{이자율}]}$
--------------	---	--

주) 윤년의 경우 366일

※ 단, 전체 현금상환 대상금액은 상기 산식에 따라 계산하나, 실제 다수 대출 중 일부 상환 시에는 개별 대출에 적용되는 실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환됨

2) 담보증권 처분순서

- 대출일 빠른순 > 유통용자 > 자기용자 > 유통대주 > 자기대주 > 종목번호 빠른순

3) 그 밖의 증권 처분순서

- 장내 > 코스닥 > 코넥스 > 그 외 증권(K-OTC, 채권, 펀드 등)
- 최근 매입일 > 종목번호 빠른순

- (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)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.

반대매매 수량[X]	=	$\frac{\text{담보평가금액} - (\text{신용용자금액} \times \text{담보유지비율})}{\text{전일증가} - (\text{반대매매 기준가격}^* \times \text{담보유지비율})}$
------------	---	--

- 수도결제, 미상환 용자 상환 등 현금미수 반영 후에 이를 감안하여 담보부족 반대매매 선정 작업함
- 반대매매 수량 산정시 전액상환방식으로 실행  
(전액상환방식 : 매도대금 전액을 신용금액 상환에 사용(거래제비용 제외))

※ 반대매매 기준가격 : 전일 증가 기준 종목등급 S, A는 85%, B등급 이하는 80%로 합니다.  
단, 시초가에 주문 체결 후 담보부족 미해소시 부족분 만큼 하한가 및 해소가능 수량으로 재계산하여 수기로 반대매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(반대매매 호가)

-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: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하고,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가 없는 경우 체결가능 호가로 처분합니다.

- (통지방법) 추가담보 납입요구 및 반대매매통보는 **약정시 정한 담보부족/반대매매통보 수신처 (E-mail, SMS) 또는 통화 내용 녹취 등 요구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**

※ **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,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장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.**

☞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 우편,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 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.

- (채무 총당 순서)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→ ②연체이자 → ③이자 → ④채무원금 순으로 총당됩니다. 다만, 고객과 합의한 경우 채무 총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(반대매매 종목교체 가능시간)
  - 반대매매 당일 08:50 전까지 직원과 통화가 되어 의사표시를 한 고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## ■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### 1. 연체이자 부담

-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(3.0%)로 구성되며 **최대 연11.0%**를 적용합니다.
-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  - ☞ **융자금/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**
    - 만기일의 **익일로부터 상환일까지** 미상환융자금(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)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.

### 2. 그 밖의 불이익

- 반대매매 후 최종 미납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변제전까지 매일 연체이자율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되며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- 미납금 발생 후 3개월간 미변제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됩니다.

## ■ 신용 연체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(1)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- (2)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신용거래, 증권담보융자거래, 만기연장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- (3)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- (4)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- (5)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※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(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)따라 안내되는 내용으로 회사(삼성증권)와의 신용거래가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또는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

## ■ 신용거래의 위험성

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**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.**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

### 1. 신용거래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(사례1)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%이며, 보증금률 45%인 경우 450만원을 가지고 1,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181%입니다.(1,000÷550×100)  
 →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(450만원)을 상회하게 됩니다.
- (사례2)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%이며, 보증금률 100%인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어 받은 경우  
 →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(1천만원)을 상회하게 됩니다.

### 2.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**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**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 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**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,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**이 부담해야 합니다.

3. 신용거래계좌의 **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, 신용용자금 초과 사용으로 허수증거금 발생시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**
4. 회사는 **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용자금 또는 신용대주가 있는 고객**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**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**합니다.
5. 신용거래에 의해 **손실이 발생한 경우, 상환 결제 전 출금, 매매로 결제일에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  
 (사례) 현금주식 1,000만원매도와 신용용자(대주) 상환손 500만원 동시 발생 상태에서 현금주식 1,000만원 매수 가능하며, 결제일에 500만원 미수가 발생합니다.
6. 신용대주매도 보유 중(권리락일 전 매도 후 권리락일 이후 상환) 권리락 발생시 **권리대금의 추가납부가 발생**하며, 권리대금 납부일에 **계좌내 현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미수가 발생(연체로 부과)**됩니다.

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,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

1. 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용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 (이하 “유통금융매수증권”)에 발생한 **배당, 무상 등 권리관계의 처리**는 한국증권금융의 “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요령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 부터 배당, 무상주 등을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**합니다.
  - 가. 주식배당, 현금배당, 무상증자에 대한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배정통지서에 유통금융매수증권 수량은 포함되지 않으나, **일반수량과 동일하게 해당 권리 입금(고)일에 지급** 합니다.
  - 나. **주식배당, 현금배당, 무상증자 외 권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한 고객 권리 지원을 위하여 유통금융매수 증권을 자기신용매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**
2. 고객이 담보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한국증권금융은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**제3자에게 대여(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)할 수 있습니다.**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**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(약관<별지>)**에 따라 **고객에게 지급**합니다.
  - 가. 고객이 담보활용에 동의 하더라도 시장 수급상황 등에 따라 보유잔고가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- 나. 담보활용으로 발생된 대여소득(담보활용 수수료)에 대해서는 **기타소득세 20%(+지방소득세2%)가 부과** 됩니다. **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의 대상**이 되므로 개별적으로 소득 신고 해야 합니다.
3.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**의결권**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**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**될 수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를 원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.
  - 가. 유통금융매수증권의 **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기준일 5영업일 이전에 담보활용동의 철회를 완료**해야 합니다.
  - 나. 주주총회기준일 5영업일 이전에 담보활용동의 철회 완료 후 고객이 회사(삼성증권)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**주주총회 5영업일 이전에 회사(삼성증권)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**하여야 하며, 한국증권금융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.
  - 다. 이를 위해 회사(삼성증권)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한국증권금융으로 부터 통보 받아 문자(SMS)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발송한 위임장 및 증빙자료(인감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등)를 지참하여 주주총회에 참석(전자 투표는 불가)
4.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공개매수 일정이 발생한 경우 신청마감일 3영업일 전까지 현금상환 후 주간증권을 통하여 공개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## ■ 신용거래대주 관련 유의사항

- ◎ **(호가가격제한)**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**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**됩니다. 다만,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,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**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**할 수 있습니다.
- ◎ **(유통대주 이용시 제한 사항)**
  -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(현금주식+신용주식)가 있는 경우 **동일 종목의 신규주문이 불가**합니다.
  - 대주 잔고 보유시 **동일종목 매수가 불가**합니다.
- ◎ **(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의무)**  
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**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**과태료가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  -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: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.01%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
  -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: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.5% 이상인 경우
 ※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 > 민원·신고 > 자본시장보고 > 공매도포지션보고및공시) (개인)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매뉴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.
- ◎ **(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제한)**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**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(증권신고서, 소액공모 공시서류, 주요사항보고서, 한국거래소 공시(공정공시 포함)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)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**,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(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) **과징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-34조에 따라) **모집(매출)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\*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** 됩니다.
  - \* 모집(매출)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매수한 경우(체결일 기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) 등

## ■ 기타 주의사항

- ◎ **약관·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**
  - 회사는 필요한 경우 **신용거래용자(대주)이자율, 연체이자율, 대주매각대금 이용료, 신용거래보증금률, 대용증권 납부 가능 비율, 담보유지비율, 추가담보납부기간** 등을 **변경**할 수 있습니다.
  - 회사는 **신용거래약관을 변경**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(**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, 신·구대 비표 등**)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, 홈페이지, HTS, MTS 등에 게시합니다.
  - 약관의 **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**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**개별통지(신·구대비표 포함)**합니다.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**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**
  - ※ 다만, 관계법규 제·개정 등으로 약관 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,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·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고 바랍니다.